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2023.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군수·구청장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에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됨에 따른 법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원산지표시 기준(복합원재료, 외국산 표시) 개선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분류를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농수산물 가공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개선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의 명칭 생략 가능(안 제3조제1호)
- 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가공품 주원료 표시대상 명확화(안 3조의2)

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 수입 원료 원산지가 3개국만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의 ‘등’ 생략 가능(안 제4조제1항)
- 복합원재료 내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 표시 생략 가능(안 제4조제3항제3호)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분류 정비 및 용어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2)

- 포장육은 식육을 단순 절단·혼합 포장한 것으로 농산물(육류)로 재분류
- HS번호의 품명 정의 현행화
- 장기보존식품은 식품 유형이 아닌 식품을 처리·보존하는 기술과 방법을 구분한 것으로 대상품목에서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용어 명확화
- 축산물에 육류 부산물을 포함함에 따라 수산물에도 식용 부산물을 포함
- 원산지 표시대상 중 비식용 수산물(갯지렁이류) 대상품목에서 삭제
- 조미김의 HS번호 변경(2106 → 2008)에 따른 품목 재분류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 문의처 : 044-201-2276, 2277, FAX: 044-868-0705

라. 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u>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합유가공품의</u>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u>영 제3조제2항제1호</u>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u>그 원료가</u>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	----- ----- ----- ----- -----. 1. ----- ----- ----- <u>식육가공품류의</u> ----- ----- -----. 2. ----- ----- <u>영 제3조제2항제1호</u>----- -----. ----- 3. ----- <u>「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어육살, 건포류와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u>

현행	개정안
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u>수입한</u>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u>가공품의</u>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u>표시하거나</u>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u>수산물(식용부산물 포함)로</u> --- ----- ----- ----- -----. 4. <u>수입 또는 반입한</u> ----- ----- ----- <u>「대외무역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u> <u>가공품의</u> -----.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 ----- ----- ----- ----- ----- ----- <u>표시(단, 3개국만 변경된 경우</u> <u>“등” 생략 가능)하거나</u> ----- ----- ----- ----- -----

현행	개정안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2. (생략) <u><신 설></u> ④ (생략)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복합원재료 내 표시 대상인 특정 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들이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

현행	개정안
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3년 7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 칙 > <u>< 신 설 ></u>	----- ----- <u>2026년 7월 1일</u> ----- ----- ----- -----. < 부 칙 > <u>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원산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u> <u>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에는 제조일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table border="1"> <tr> <th>품목류</th><th>대 상 품 목</th></tr> <tr> <td><u>육류(12)</u></td><td>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td></tr> </table>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table border="1"> <tr> <th>HS번호</th><th>품명</th></tr> <tr> <td>0102</td><td><u>소</u></td></tr> <tr> <td>0201</td><td>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2</td><td>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3</td><td>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4</td><td>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5</td><td>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6</td><td><u>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td></tr> <tr> <td>0207</td><td><u>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td></tr> <tr> <td>0208</td><td>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able>	품목류	대 상 품 목	<u>육류(12)</u>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HS번호	품명	0102	<u>소</u>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u>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0207	<u>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table border="1"> <tr> <th>품목류</th><th>대 상 품 목</th></tr> <tr> <td><u>육류(12)</u> <u>* 포장육 포함</u></td><td>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td></tr> </table>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u>산업통상부장관</u>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table border="1"> <tr> <th>HS번호</th><th>품명</th></tr> <tr> <td>0102</td><td><u>살아 있는 소</u></td></tr> <tr> <td>0201</td><td>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2</td><td>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3</td><td>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4</td><td>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5</td><td>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r> <td>0206</td><td><u>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td></tr> <tr> <td>0207</td><td><u>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td></tr> <tr> <td>0208</td><td>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td></tr> </table>	품목류	대 상 품 목	<u>육류(12)</u> <u>* 포장육 포함</u>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HS번호	품명	0102	<u>살아 있는 소</u>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u>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0207	<u>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품목류	대 상 품 목																																																
<u>육류(12)</u>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HS번호	품명																																																
0102	<u>소</u>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u>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0207	<u>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품목류	대 상 품 목																																																
<u>육류(12)</u> <u>* 포장육 포함</u>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HS번호	품명																																																
0102	<u>살아 있는 소</u>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u>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0207	<u>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u> ※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 고운가루·거친가루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테어리 스프레드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테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6	치즈와 커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겉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	새의 알(겉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보존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겉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쥔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8	새의 알(겉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쥔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보존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 <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 <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0510	용연향·해리향·시벳과 사향·캔대리디즈· <u>담즙</u> (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물(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u>저장처리를</u> 한 것에 한한다)	0510	용연향·해리향·시벳과 사향·캔대리디즈· <u>쓸개즙</u> (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물(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u>보존처리를</u> 한 것에 한한다)
0601	인경·괴경· <u>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u>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1	인경·괴경· <u>괴근·구경·관근·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u> ,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삼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2	<u>기타의 살아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꼭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u>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 <u>리코</u> 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 <u>리크</u> 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 <u>세리리아크·부우</u>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 <u>셀리리엑·무</u>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u>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0711	<u>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0712	건조한 채소(<u>원상의 것</u> ·절단한 것·얇게 썬 것· <u>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u> ,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2	건조한 채소(<u>원래 모양인 것</u> ,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u>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에 한하며</u> ,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쥬뿌리·살렘·국아· <u>고구마</u>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u>펠리트</u>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u>수</u>	0714	매니옥·쥬뿌리·살렘· <u>돼지감자·고구마</u>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u>펠릿</u>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u>심(pith)</u>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 <u>에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u>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 <u>아보카도·구아바·망고 및 망고스틴</u>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 <u>버찌</u>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u>슬로우</u>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 <u>체리</u>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u>슬로</u>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찢는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찢는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u>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황가스·염수·유허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u>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2	일시 <u>보존처리(예:이산화황가스·염수·유허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u>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u>내지</u>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u>이류의</u>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u>부터</u>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u>이 류의</u>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허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u>저장처리한</u> 것에 한한다)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건조한 것, 염수·유허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u>보존처리한</u> 것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의 <u>각과 피 및</u> 커피를 함유한 <u>커피대용물</u>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커피의 <u>껍데기와 껍질</u> , 커피를 함유한 <u>커피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불문한다)</u>
0902	차류(<u>가황한 것인지의</u> 여부를 불문한다)	0902	차류(<u>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의</u> 여부를 불문한다)
0903	<u>마테</u>	0903	<u>마테</u>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u>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u>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u>건조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u>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5	바닐라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 · 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7	정향(과실 · 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u>소도구</u>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u>소두구</u>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u>카레이</u> 및 기타 향신료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u>카레</u>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2	호밀
1003	보리	1003	보리
1004	귀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5	옥수수
1006	쌀	1006	쌀
1007	수수	1007	수수
1008	메밀 · <u>조</u>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008	메밀 · <u>밀리트</u>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u>곡분</u>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2	<u>곡물의 고운가루</u>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u>분쇄물 · 조분 및 펠리트</u>	1103	곡물의 <u>부순 알곡 · 거친 가루 및 펠릿</u>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뿜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u>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u>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뿜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 과 곡물의 <u>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u>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1105	감자의 <u>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u>	1105	감자의 <u>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알갱이·펠리트</u>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u>분·조분과 분말</u>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u>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알갱이·펠리트</u>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u>낙화생</u>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u>땅콩</u>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u>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u>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u>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u>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u>신선한 것</u>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u>분말상으로 한</u>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u>신선·냉장·냉동</u>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u>가루로 된</u>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u>로우커스트두</u> ,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212	<u>로커스트콩</u> ,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u>디크너</u>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	식물성 <u>수액과 추출물</u> ,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u>시커너</u>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1503	라드스테아린 · 라드유 · 올레오스테아린 · 올레오유 및 벨로우유 로서 유화 ·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3	라드스테아린 · 라드유 · 올레오스테아린 · 올레오유 및 벨로우유 로서 유화 ·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 · 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동 · 식물성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페액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남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남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u>기제로한</u> 조제식료품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u>기본 재료로 한</u>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u>저장처리</u> 한 육·설육 또는 피	1602	기타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육·설육 또는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u>엑스와</u> 즙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u>추출물과</u> 즙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u>원상</u>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u>붉은 것을</u> 포함한다)	1801	코코아두(<u>원래 모양</u>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u>생 것이나 붉은 것을</u> 포함한다)
1802	<u>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u> 코코아 웨이스트	1802	<u>코코아의 껍테기와 껍질, 기타</u>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u>지 또는 유</u>)	1804	코코아 버터, <u>지방 및 기름</u>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u>초코렛</u> 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806	<u>초콜릿</u> 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u>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u>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u>전중량의</u>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u>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u>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u>전중량의</u>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	<u>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u>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u>전 중량의</u>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u>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u>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u>전 중량의</u>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u>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u>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u>쿠우스쿠우스</u>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u>라자니아· 뇨끼·라비올리</u> ·카넬로니 등과 같이 <u>기타의</u>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u>쿠스쿠스</u>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u>플레이크상·난알상·진주상·무거리상</u>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u>플레이크모양·난알모양·진주모양·무거리모양</u>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u>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난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1904	<u>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난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2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u>저장처리한</u>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	설탕으로 <u>보존처리한</u>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 <u>과실젤리·마말레이드</u> ·과실 또는 견과류의 푸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7	잼· <u>과실젤리·마말레이드</u> ·과실 또는 견과류의 푸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u>저장처리한</u>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u>보존처리한</u>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했는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1	커피·차 또는 마테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1	커피·차 또는 마테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2203	맥주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사케)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올(알콜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현행		개정안	
HS번호	품명	HS번호	품명
2208	변성하지 아니한 <u>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u> .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	변성하지 아니한 <u>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u> ,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u>분·조분 및 펠리트</u>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u>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u>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u>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u>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u>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 모양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u>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u>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u>펠릿 모양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u> .)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사료용 조제품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 <u>시가실로 및 권련</u> (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	시가·셔루트· <u>시가릴로 및 권련</u> (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u>담배엑스와</u> 에센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u>담배추출물과</u> 에센스

3.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u>초콜릿류</u> (9)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u>식육가공품 및 포장육</u> (12)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u>천연케이싱</u>),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u>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u>

3. 농산물 가공품: 276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u>초콜릿류</u> (9)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u>식육가공품</u> (11)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u>식육케이싱</u>),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u>식육간편조리세트</u>

- 19 -

현행	개정안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table border="1"> <tr> <td>유가공품(35)</td><td>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td></tr> <tr> <td>장기보존식품(3)</td><td>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td></tr> </table>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1) <table border="1"> <tr> <td>유가공품(35)</td><td>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td></tr> <tr> <td><삭제></td><td><삭제></td></tr> </table>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치즈 ,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삭제>	<삭제>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치즈 ,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삭제>	<삭제>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225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을 포함(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품목</th></tr> <tr> <td>해면기타(10)</td><td>개불류, 갯지렁이류,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td></tr> </table> 2.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개 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수산물	구분	품목	해면기타(10)	개불류 , 갯지렁이류 ,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224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을 포함(식용 부산물은 포함하되, 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품목</th></tr> <tr> <td>해면기타(9)</td><td>개불류,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td></tr> </table> 2.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개 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수산물	구분	품목	해면기타(9)	개불류 ,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구분	품목								
해면기타(10)	개불류 , 갯지렁이류 ,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구분	품목								
해면기타(9)	개불류 ,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챙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붙임 2] 개정고시 전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그 복합원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를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생략하고,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한 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표시”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를 “식육가공품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그 원료가”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어육살, 건포류와 기타 수산물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산물(식용부산물 포함)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입한”을 “수입 또는 반입한”으로, “가공품의”를 “「대외무역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공품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하거나”를 “표시(단, 3개국만 변경된 경우 “등” 생략 가능)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합원재료 내 표시 대상인 특정 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들이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7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에는 제조일을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